

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3. 5.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4	0	0	0	0	0	0	0
1	☞☞☞☞☞☞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2	☞☞☞☞☞☞	▲▲ @@ 송수관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3	☆ ☆ ☆ ☆ ☆	@@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4	@@@@@@과	△△△△ 전망대 설치공사 (◎◎쉼터)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
2.	▲▲ @@ 송수관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5
3.	@@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9
4.	△△△△ 전망대 설치공사(◎◎쉼터) 추진 부적정(시정)	14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장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 ♣♣♣♣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시장 %% 소규모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	□□	하수처리장 Q=180㎥/일 (중 50㎥/일) 하수관로 L=5.1km	4,081	2,983	1,098	2021.9.27. ~ 2024.3.5.	&&건설(주) ○○○	(주)◇◇엔지니어링 ○○○	
▲▲♣♣♣♣ 소규모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	□□	하수처리장 Q=196㎥/일 (중 150㎥/일) 하수관로 L=4.5km	3,597	2,346	1,251	2022.9.24. ~ 2024.7.30.	(주)&&건설 ○○○	(주)◇◇◇◇기술 ○○○	

1.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에서는 “▲▲시장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완료(2020.12.31.)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를 착공 하였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으로 설계변경 관리 및 시공 확인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86조 제9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 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 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엔지니어링에서는 “▲▲시장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수관로 설치구간의 관로 터파기 포장 굴착 폭을 당초 설계에 1.1m~1.13m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일부 구간1)에 관로 터파기를 위한 포장 굴착 폭을 0.85m~1.13m로 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조 및 안전성 검토 없이 추진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 및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기술에서는 “▲▲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수관로 설치구간의 관로 터파기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에 포장 2면 절단과 굴착 폭을 1.2m~1.6m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일부 구간2)에 포장면 1면 절단과 굴착 폭을 0.8m로 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조 및 안전성 검토 없이 추진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 및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압송 A LINE NO 3+5~15+13, L=245m, 압송 C LINE NO 1+13~36+7, L=694m, 압송 E LINE NO 3+15~18+12, L=297m

2) 오수관로 W-LINE NO 11+14~27+7, L=313m

3.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총괄수행 지도·점검 미흡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2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읍읍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부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송수관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 송수관로 설치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22.6.29. \$\$\$\$건설(주)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 송수관로 설치공사	▲▲ @@	□□ ■	송수관로 L=9.9km	6,074	2,986	3,088	2022.6.29. ~ 2023.12.20.	\$\$\$\$건설(주)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³⁾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에서는 “▲▲ @@ 송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 계획을 미승인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설계변경 관리 및 시공 확인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

3)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 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을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에서는 “▲▲ @@ 송수관로 설치공사”의 상수관로 설치 구간의 관로 터파기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포장 굴착 폭을 1.65m로 계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일부 구간⁴⁾ 관로 터파기 폭을 1.17m~1.22m로 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조 및 안전성 검토 없이 추진하고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⁵⁾(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에서는 “▲▲ @@ 송수관로 설치공사”의 사토량이 11,430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

4) NO 0+0 ~ NO 7+0, NO 54+0 ~ NO 63+0

5)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재까지 토석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천 정비공사”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천 정비공사	§§면	@@리	소하천정비 L=2.64km 소교량3개소	2,734	2022.04.15.	2022.04.25. ~ 2024.04.23.	(주)§§건설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⁶⁾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 2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⁷⁾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품질시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런데 ◇◇군 ☆☆☆☆☆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 계획(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공시체제작 자체시험 24건)에 따른 공종별 품질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품질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관리업무 소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 후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 제49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세륜세차시설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에 반영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2개소만 설치하여 설계도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미가동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 공사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이나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이상에 해당되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⁸⁾ 000,000천원 과다하게 설계내역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2호나목1)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 ②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전망대 설치공사(◎◎쉼터)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2.15. (주)선재(대표 박정환)과 공사계약을 하여 “△△△△ 전망대 설치공사(◎◎쉼터)”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 전망대 설치공사 (◎◎쉼터)	전망대 1식, 전통정자 및 쉼터 조성 1식	2022. 2. 21. ~ 2023. 2. 15.	599	(주)\$\$건설 ○○○	

1.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38조에 따르면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

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3.6.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2023. 3. 9.) 데크 설치 시 31개소의 콘크리트 기초와 철골기둥을 연결하면서 기초의 가운데 부분에 기초 타설 시 매입한 앵커볼트에 연결하지 않고 [사진]과 같이 매입된 앵커볼트를 잘라낸 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새로 앵커볼트를 박은 뒤 그 위에 철골기둥을 연결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⁹⁾

[사진] 부적정 시공 현황

--	--

2. 품질시험계획서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1-18에 의하면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항목을 공사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시

9) 기둥이 기초의 한쪽 부분에 치우쳐져 편심하중을 받게 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하고, 앵커볼트 또한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했으므로 특성상 인장력을 받기때문에 뽐힘강도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해야함.

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하이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장 작성·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 전망대 설치공사(○○○썬터)”의 품질시험계획의 검사 장비 구비, 시험실 설치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 전망대 설치공사(○○○썬터)”를 실시하면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품질시험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2년 12월 14일 설계변경 시 품질관리비를 전액 감액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기성검사 및 대가 지급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은 @@@@과에서는 “△△△△ 전망대 설치공사(◎◎쉼터)”를 시행하면서 나무식재 등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기성검사를 한 후 00,000천 원을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간접공사비 적용 부적정

공사 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 전망대 설치공사(◎◎쉼터)”는 문화재 수리공사로 문화재 수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00,000천 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부적정하게 시공된 기초부분은 보완하시고, 과다계상 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